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제 1090 호 2017. 10. 26. (목)

## 훈령

-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241호[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증보증 규정 일부규정개정] ..... 2

## 고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198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] ..... 4  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0호[『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(신명천 3구역)』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] ..... 5  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1호[도로계획시설(도로 : 소로1-106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] ..... 10  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4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] ..... 21  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5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22  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6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24

## 공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1162호[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26

안 내	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계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bukgu.ulsan.kr">www.bukgu.ulsan.kr</a> 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개정  
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박 전동



2017년 10월 26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41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개정규정

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호 중 “재무업무담당은 5천만원”을 “재무주무관 및 그 대리자 · 분임자는 1억원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2호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1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 1. 개정이유

-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증액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, 「지방회계법(2016.5.29.제정)」 제정에 따라 관련 법조항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개정내용

-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증액 및 대상자 확대
  - 재무관, 회계담당과장, 재무업무담당 : 5천만원 → 재무관, 회계담당과장, 재무주무관 및 그 대리자·분임자 1억원
  - 그 외 회계관계공무원 : 1천만원 → 2천만원
- 상위법령 제정으로 인한 법조항 변경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 → 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로 변경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- 198호

## 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6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하천의 명칭

양정천

#### 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

#### 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공작물의 신축

#### 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양정동 511번지 외 2필지

나. 면적 : 872m<sup>2</sup>

#### 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

영구 : 2017. 10. 20. ~ 2021. 12. 31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- 200호

## 『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(신명천 3구역)』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

『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(신명천 3구역)』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3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하천공사의 명칭 : 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(신명천 3구역)

#### 2.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

- 목 적 : 2016년 태풍 '차바' 시 피해를 입은 신명천(상류부)에 대하여 하천시설물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향후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도모
- 개 요 : 축제 및 호안정비 L=1.1km, 교량 재가설 4개소

#### 3.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

-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(상대안마을 ~ 상류부) 일원(신명천 내)

#### 4.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
- 명 칭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-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(연암동, 북구청)

#### 5.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

- 착수일 : 2017. 7.      - 준공예정년월일 : 2018. 1.

**6. 수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**

- 해당없음

**7. 실시설계도서 : 시행청 비치 (북구청 건설과)****8.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**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2016년	비 고
사업비	1,716	1,716	태풍 '차바' 재해복구비

**9. 공사예정공정표 : 시행청 비치 (울산북구청 건설과)****10.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**

- 하천명 : 신명천(지방하천)
- 위치 및 사업규모 : 상기와 같음
- '신명천 하천기본계획'에 따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

**11. 폐친부지 등의 발생예상면적 : 해당사항 없음****1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북구청 건설과(☎052-241-788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##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·주소

번호	소재지			공부면적 (㎡)	면적 (㎡)	토지 소유자 주소 및 성명			소유권이외의 권리		
	구	읍	지번			주소	성명	권리구분	권리자	주소	비고
1	북	대안	산209-4	구	520	4		국(농림수산부)			
2	북	대안	1115	도	724	23		국(국토교통부)			
3	북	대안	산209-3	읍	2,920	2	울산광역시 중구 내항길 18-1(반구동)	황성구 외 3인			
4	북	대안	1059-1	현	55,679	6,750		국(국토교통부)			
5	북	대안	820	천	255	92		김진구			
6	북	대안	산209-5	천	1,887	818		국(농림수산부)			
7	북	대안	산209-13	읍	99,023	16	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166	오플수 외 6인			
8	북	대안	825	읍	959	190	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로로 200, 105동 1703호	김진구			
9	북	대안	산252	읍	41,883	1,231		국(국토교통부)			
10	북	대안	1114	도	79	79		순영배			
11	북	대안	826-2	천	1,372	751	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59 13호	이날지 외 1인			
12	북	대안	1113	도	89	76		국(국토교통부)			
13	북	대안	산253	읍	5,256	255	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로로 200, 105동 1703호	순영배			
14	북	대안	844	읍	231	227	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동면 대안리 486	이종호			
15	북	대안	834-14	읍	46	21		울산광역시 북구			
16	북	대안	834-8	읍	28	1	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55-11 201호	권순조 외 6인			
17	북	대안	1112	도	73	66		국(국토교통부)			
18	북	대안	842	읍	642	4	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209(대안동)	임경호			
19	북	대안	845-1	읍	66	66	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로로 200, 105동 1703호	순영배			

##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·주소

번호	소재지			면적 면적 (m <sup>2</sup> )			면적 면적 (m <sup>2</sup> )			면적 면적 (m <sup>2</sup> )			면적 면적 (m <sup>2</sup> )			면적 면적 (m <sup>2</sup> )		
	구	동	지번	지목	면적 (m <sup>2</sup> )	면적 (m <sup>2</sup> )	면적 (m <sup>2</sup> )	면적 (m <sup>2</sup> )	면적 (m <sup>2</sup> )	면적 (m <sup>2</sup> )	면적 (m <sup>2</sup> )	면적 (m <sup>2</sup> )	면적 (m <sup>2</sup> )	면적 (m <sup>2</sup> )	면적 (m <sup>2</sup> )	면적 (m <sup>2</sup> )	면적 (m <sup>2</sup> )	
20	북	대안	1085	도	813	387												
21	북	대안	845-4	읍	190	190												
22	북	대안	845-5	읍	85	85												
23	북	대안	845	읍	270	25												
24	북	대안	845-6	읍	294	273	울산 남구 신정동 864-9											
25	북	대안	845-2	읍	25	25	울산 남구 신정동 864-9											
26	북	대안	847-1	천	400	400	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서동 158										이희문 외 1인	
27	북	대안	847	천	199	197	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466-1										이종필 외 1인	
28	북	대안	847-4	읍	27,260	2,030	울산 남구 신정동 864-9										도경구	
29	북	대안	847-3	천	446	445	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466-1										이종필 외 1인	
30	북	대안	847-2	천	3	3											이희문 외 1인	
31	북	대안	845-7	읍	346	19	울산 남구 신정동 864-9										도경구	
32	북	대안	500-2	천	283	275	울산 남구 신정동 864-9										도경구	
33	북	대안	500-1	천	204	1	울산 남구 신정동 864-9										도경구	
34	북	대안	84115	읍	36,198	242	울산광역시 남구 통월로 27번길 15(신정동)										김미록	
35	북	대안	498-2	천	3	3	울산 시 강동면 대안리 739										대학교 조계종 신용사	
36	북	대안	498-1	천	56	5	울산 시 강동면 대안리 739										대학교 조계종 신용사	
37	북	대안	497-2	천	155	155	울산 시 강동면 대안리 497										김종2	
38	북	대안	497-1	천	130	51	울산 시 강동면 대안리 497										김종2	

도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·주소

번호	소재지			토지 소유자 주소 및 성명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	
	구	읍	지번	지적	공부면적 (m <sup>2</sup> )	편입면적 (m <sup>2</sup> )	주소	성명	권리구분	권리자	
39	■	대안	496	길	221	221		중랑관			
40	■	대안	495-1	천	149	28	울산시 강동면 대안리 739	대한불교 조계종 신불사			
41	■	대안	495-2	천	99	99	울산시 강동면 대안리 739	대한불교 조계종 신불사			
42	■	대안	494	길	803	429		김현조			
43	■	대안	491-1	길	311	4		국(기획재정부)			
44	■	대안	1086	도	33	31		국(국토교통부)			
45	■	대안	1087	도	255	1		국(국토교통부)			
■					280,963	16,356					45호지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- 201호

##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로1-106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도시계획시설(소로1-106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6일

###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-23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06호선)사업
  - 나. 명 칭 : 날천편백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
3. 사업규모 : 도로개설 L=1,707m, B=10m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  - 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
5. 사업기간
  - 가. 당 초 : 2016. 3. ~ 2018. 3.
  - 나. 변 경 : 2016. 3. ~ 2018. 8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: 붙임 명세와 같음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붙임 명세서와 같음
8.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(☎052-241-78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단번	부지	시	면적(m <sup>2</sup> )	소유			소유자(면적)부록
				면적	당초	현장	
1	부지전용	882-30	8	45,945	154	164	부지전용
2	부지전용	882-24	8	2,435	417	429	부지전용
3	부지전용	475-3	8	4,45	11	11	부지전용
4	부지전용	936	9	2,532	22	20	부지전용
5	부지전용	887-	8	16,21	3,664	3,554	부지전용
6	부지전용	882-23	8	1,058	157	164	부지전용
7	부지전용	882-50	8	1,545	516	665	부지전용
8	부지전용	882-103	대	405	73	74	부지전용
9	부지전용	882-188	8	9,848	2,256	2,256	부지전용
10	부지전용	882-378	8	4,3	82	81	부지전용
11	부지전용	882-57	882-79	8	505	146	146
12	부지전용	882-384	8	657	729	231	부지전용
13	부지전용	882-395	882-386	8	491	135	123
14	부지전용	882-34	882-885	8	32	12	9
15	부지전용	882-22	882-778	8	23	16	16
16	부지전용	3428	8	2,339	4,5	359	부지전용
17	부지전용	482-3	8	426	74	26	부지전용
18	부지전용	376-3	8	175-6	9	92	부지전용
19	부지전용	377-	8	375-5	8	86	부지전용
20	부지전용	377-2	8	377-4	8	95	부지전용
21	부지전용	377-	8	377-3	8	1,3	부지전용
22	부지전용	377-	8	377-3	8	305	부지전용
23	부지전용	377-	8	377-3	8	31	부지전용
24	부지전용	377-2	8	377-2	8	241	부지전용
25	부지전용	388-	8	388-4	8	248	부지전용
26	부지전용	388-2	8	388-5	8	18	부지전용
27	부지전용	388	8	388-3	8	15	부지전용

2017. 10. 26. (목요일)











수급		~7.9		~7.10		~7.11		~7.12		~7.13		~7.14		~7.15		~7.16		~7.17		~7.18		~7.19		~7.20		~7.21		~7.22		~7.23		~7.24		~7.25		~7.26		~7.27		~7.28		~7.29		~7.30		~7.31		~7.32		~7.33		~7.34		~7.35		~7.36		~7.37		~7.38		~7.39		~7.40		~7.41		~7.42		~7.43		~7.44		~7.45		~7.46		~7.47		~7.48		~7.49		~7.50		~7.51		~7.52		~7.53		~7.54		~7.55		~7.56		~7.57		~7.58		~7.59		~7.60		~7.61		~7.62		~7.63		~7.64		~7.65		~7.66		~7.67		~7.68		~7.69		~7.70		~7.71		~7.72		~7.73		~7.74		~7.75		~7.76		~7.77		~7.78		~7.79		~7.80		~7.81		~7.82		~7.83		~7.84		~7.85		~7.86		~7.87		~7.88		~7.89		~7.90		~7.91		~7.92		~7.93		~7.94		~7.95		~7.96		~7.97		~7.98		~7.99		~7.100		~7.101		~7.102		~7.103		~7.104		~7.105		~7.106		~7.107		~7.108		~7.109		~7.110		~7.111		~7.112		~7.113		~7.114		~7.115		~7.116		~7.117		~7.118		~7.119		~7.120		~7.121		~7.122		~7.123		~7.124		~7.125		~7.126		~7.127		~7.128		~7.129		~7.130		~7.131		~7.132		~7.133		~7.134		~7.135		~7.136		~7.137		~7.138		~7.139		~7.140		~7.141		~7.142		~7.143		~7.144		~7.145		~7.146		~7.147		~7.148		~7.149		~7.150		~7.151		~7.152		~7.153		~7.154		~7.155		~7.156		~7.157		~7.158		~7.159		~7.160		~7.161		~7.162		~7.163		~7.164		~7.165		~7.166		~7.167		~7.168		~7.169		~7.170		~7.171		~7.172		~7.173		~7.174		~7.175		~7.176		~7.177		~7.178		~7.179		~7.180		~7.181		~7.182		~7.183		~7.184		~7.185		~7.186		~7.187		~7.188		~7.189		~7.190		~7.191		~7.192		~7.193		~7.194		~7.195		~7.196		~7.197		~7.198		~7.199		~7.200		~7.201		~7.202		~7.203		~7.204		~7.205		~7.206		~7.207		~7.208		~7.209		~7.210		~7.211		~7.212		~7.213		~7.214		~7.215		~7.216		~7.217		~7.218		~7.219		~7.220		~7.221		~7.222		~7.223		~7.224		~7.225		~7.226		~7.227		~7.228		~7.229		~7.230		~7.231		~7.232		~7.233		~7.234		~7.235		~7.236		~7.237		~7.238		~7.239		~7.240		~7.241		~7.242		~7.243		~7.244		~7.245		~7.246		~7.247		~7.248		~7.249		~7.250		~7.251		~7.252		~7.253		~7.254		~7.255		~7.256		~7.257		~7.258		~7.259		~7.260		~7.261		~7.262		~7.263		~7.264		~7.265		~7.266		~7.267		~7.268		~7.269		~7.270		~7.271		~7.272		~7.273		~7.274		~7.275		~7.276		~7.277		~7.278		~7.279		~7.280		~7.281		~7.282		~7.283		~7.284		~7.285		~7.286		~7.287		~7.288		~7.289		~7.290		~7.291		~7.292		~7.293		~7.294		~7.295		~7.296		~7.297		~7.298		~7.299		~7.300		~7.301		~7.302		~7.303		~7.304		~7.305		~7.306		~7.307		~7.308		~7.309		~7.310		~7.311		~7.312		~7.313		~7.314		~7.315		~7.316		~7.317		~7.318		~7.319		~7.320		~7.321		~7.322		~7.323		~7.324		~7.325		~7.326		~7.327		~7.328		~7.329		~7.330		~7.331		~7.332		~7.333		~7.334		~7.335		~7.336		~7.337		~7.338		~7.339		~7.340		~7.341		~7.342		~7.343		~7.344		~7.345		~7.346		~7.347		~7.348		~7.349		~7.350		~7.351		~7.352		~7.353		~7.354		~7.355		~7.356		~7.357		~7.358		~7.359		~7.360		~7.361		~7.362		~7.363		~7.364		~7.365		~7.366		~7.367		~7.368		~7.369		~7.370		~7.371		~7.372		~7.373		~7.374		~7.375		~7.376		~7.377		~7.378		~7.379		~7.380		~7.381		~7.382		~7.383		~7.384		~7.385		~7.386		~7.387		~7.388		~7.389		~7.390		~7.391		~7.392		~7.393		~7.394		~7.395		~7.396		~7.397		~7.398		~7.399		~7.400		~7.401		~7.402		~7.403		~7.404		~7.405		~7.406		~7.407		~7.408		~7.409		~7.410		~7.411		~7.412		~7.413		~7.414		~7.415		~7.416		~7.417		~7.418		~7.419		~7.420		~7.421		~7.422		~7.423		~7.424		~7.425		~7.426		~7.427		~7.428		~7.429		~7.430		~7.431		~7.432		~7.433		~7.434		~7.435		~7.436		~7.437		~7.438		~7.439		~7.440		~7.441		~7.442		~7.443		~7.444		~7.445		~7.446		~7.447		~7.448		~7.449		~7.450		~7.451		~7.452		~7.453		~7.454		~7.455		~7.456		~7.457		~7.458		~7.459		~7.460		~7.461		~7.462		~7.463		~7.464		~7.465		~7.466		~7.467		~7.468		~7.469		~7.470		~7.471		~7.472		~7.473		~7.474		~7.475		~7.476		~7.477		~7.478		~7.479		~7.480		~7.481		~7.482		~7.483		~7.484		~7.485		~7.486		~7.487		~7.488		~7.489		~7.490		~7.491		~7.492		~7.493		~7.494		~7.495		~7.496		~7.497		~7.498		~7.499		~7.500		~7.501		~7.502		~7.503		~7.504		~7.505		~7.506		~7.507		~7.508		~7.509		~7.510		~7.511		~7.512		~7.513		~7.514		~7.515		~7.516		~7.517		~7.518		~7.519		~7.520		~7.521		~7.522		~7.523		~7.524		~7.525		~7.526		~7.527		~7.528		~7.529		~7.530		~7.531		~7.532		~7.533		~7.534		~7.535		~7.536		~7.537		~7.538		~7.539		~7.540		~7.541		~7.542		~7.543		~7.544		~7.545		~7.546		~7.547		~7.548		~7.549		~7.550		~7.551		~7.552		~7.553		~7.554		~7.555		~7.556		~7.557		~7.558		~7.559		~7.560		~7.561		~7.562		~7.563		~7.564		~7.565		~7.566		~7.567		~7.568		~7.569		~7.570		~7.571		~7.572		~7.573		~7.574		~7.575		~7.576		~7.577		~7.578		~7.579		~7.580		~7.581		~7.582		~7.583		~7.584		~7.585		~7.586		~7.587		~7.588		~7.589		~7.590		~7.591		~7.592		~7.593		~7.594		~7.595		~7.596		~7.597		~7.598		~7.599		~7.600		~7.601		~7.602		~7.603		~7.604		~7.605		~7.606		~7.607		~7.608		~7.609		~7.610		~7.611		~7.612		~7.613		~7.614		~7.615		~7.616		~7.617		~7.618		~7.619		~7.620		~7.621		~7.622		~7.623		~7.624		~7.625		~7.626		~7.627		~7.628		~7.629		~7.630		~7.631		~7.632		~7.633		~7.634		~7.635		~7.636		~7.637		~7.638		~7.639		~7.640		~7.641		~7.642		~7.643		~7.644		~7.645		~7.646		~7.647		~7.648		~7.649		~7.650		~7.651		~7.652		~7.653		~7.654		~7.655		~7.656		~7.657		~7.658		~7.659		~7.660		~7.661		~7.662		~7.663		~7.664		~7.665		~7.666		~7.667		~7.668		~7.669		~7.670		~7.671		~7.672		~7.673		~7.674		~7.675		~7.676		~7.677		~7.678		~7.679		~7.680		~7.681		~7.682		~7.683		~7.684		~7.685		~7.686		~7.687		~7.688		~7.689		~7.690		~7.691		~7.692		~7.693		~7.694		~7.695		~7.696		~7.697		~7.698		~7.699		~7.700		~7.701		~7.702		~7.703		~7.704		~7.705		~7.706		~7.707		~7.708		~7.709		~7.710		~7.711		~7.712		~7.713		~7.714		~7.715		~7.716		~7.717		~7.718		~7.719		~7.720		~7.721		~7.722		~7.723		~7.724		~7.725		~7.726		~7.727		~7.728		~7.729		~7.730		~7.731		~7.732		~7.733		~7.734		~7.735		~7.736		~7.737		~7.738		~7.739		~7.740		~7.741		~7.742		~7.743		~7.744		~7.745		~7.746		~7.747		~7.748		~7.749		~7.750		~7.751		~7.752		~7.753		~7.754		~7.755		~7.756		~7.757		~7.758		~7.759		~7.760		~7.761		~7.762		~7.763		~7.764		~7.765		~7.766		~7.767		~7.768		~7.769		~7.770		~7.771		~7.772		~7.773		~7.774		~7.775		~7.776		~7.777		~7.778		~7.779		~7.780		~7.781		~7.782		~7.783		~7.784		~7.785		~7.786		~7.787		~7.788		~7.789		~7.790		~7.791		~7.792		~7.793		~7.794		~7.795		~7.796		~7.797		~7.798		~7.799		~7.800		~7.801		~7	



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- 204호

## 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염포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㈜지오뱅크

나. 주소 :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248번지 3층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 (지반조사)
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양정동 772-6번지

나. 면적 : 12m<sup>2</sup>
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

일시: 2017. 10. 24. ~ 2017. 11. 7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5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1로 63-8(진장동) 외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 (별지참조)
------	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7. 10. 2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미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농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률류단지 883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1로 63-8 (진장동)	2017-10-26 진장유통으로 분기된 도로로 진장유통로의 연계성을 반영	2016-07-28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령촌자구 13B 6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8길 44-10(진장동)	2017-10-26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3	울산광역시 북구 성안동 957-1와 1필지(959-1)	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96-6(성안동)	2017-10-26 등다 마을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4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자구 87B 3-11	울산광역시 북구 회암14길 20-1(산하동)	2017-10-26 회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4-05-07	
5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06-2	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107(천곡동)	2017-10-26 옛 지명과 연관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8-05-28	
6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07-2	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113-6(천곡동)	2017-10-26 옛 지명과 연관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8-05-28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6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77-2(진장동) 외 2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\*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**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**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** 및 **세주수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**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**2017. 10. 26. 고시**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미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77-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13-6	2017-10-26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통산길 96-6	울산광역시 북구 상인동 957-2, 959-1	2017-10-26	건축물 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113-6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07-2	2017-10-26	건축물 멸실	

**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-1162호**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0월 2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**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- 행정안전부의 “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”에 따라 개별 일몰제 적용, 최소납부세제 신설 등을 반영하고
-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의 감면 일몰기한이 2017. 12. 31. 도래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감면위임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
- 나. 울산항만공사 감면기한 종료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 삭제
- 다. 최소납부세제 신설(안 제12조)
  - 재산세가 100% 면제되어 재산세 감면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% 감면율 적용(면제세액의 15%는 부담)
- 라. 조례 유효기간 3년 일몰제 부칙조문 삭제(조문별 일몰제로 변경)

**3. 개정조례안 : 붙임**

**4. 의견제출**

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세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가. 의견서 기재내용**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**나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전자메일****다. 제출기관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세무과장)**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 / 우편번호 44248
- 전화 : (052)241-7521, 팩스 : (052)241-7509,
- 전자메일(E-mail) : pg2010@korea.kr

**5. 기타 사항**

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\* 북구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참조

##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

#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장 감 면

**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**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율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**제3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** ① 「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」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면제한다.  
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**제4조(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)**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 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.

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고,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“3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고,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**제5조(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(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폐업(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)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**

1. 날천동 농공단지

**제6조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**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150원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
### 제3장 보 칙

**제7조(직접 사용의 의미)**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.

**제8조(감면 제외대상)**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9조(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)**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

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「지방세법」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법」 제32조에 따른다.

**제10조(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)**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.

**제11조(증복감면의 배제)**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12조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**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(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(「지방세법」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
2. 제3조에 따른 감면

**제13조(감면신청 등)**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「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